

FTA BRIEF

순환경제와 FTA 활용
- 사용후 배터리를 중심으로

Vol. 01
March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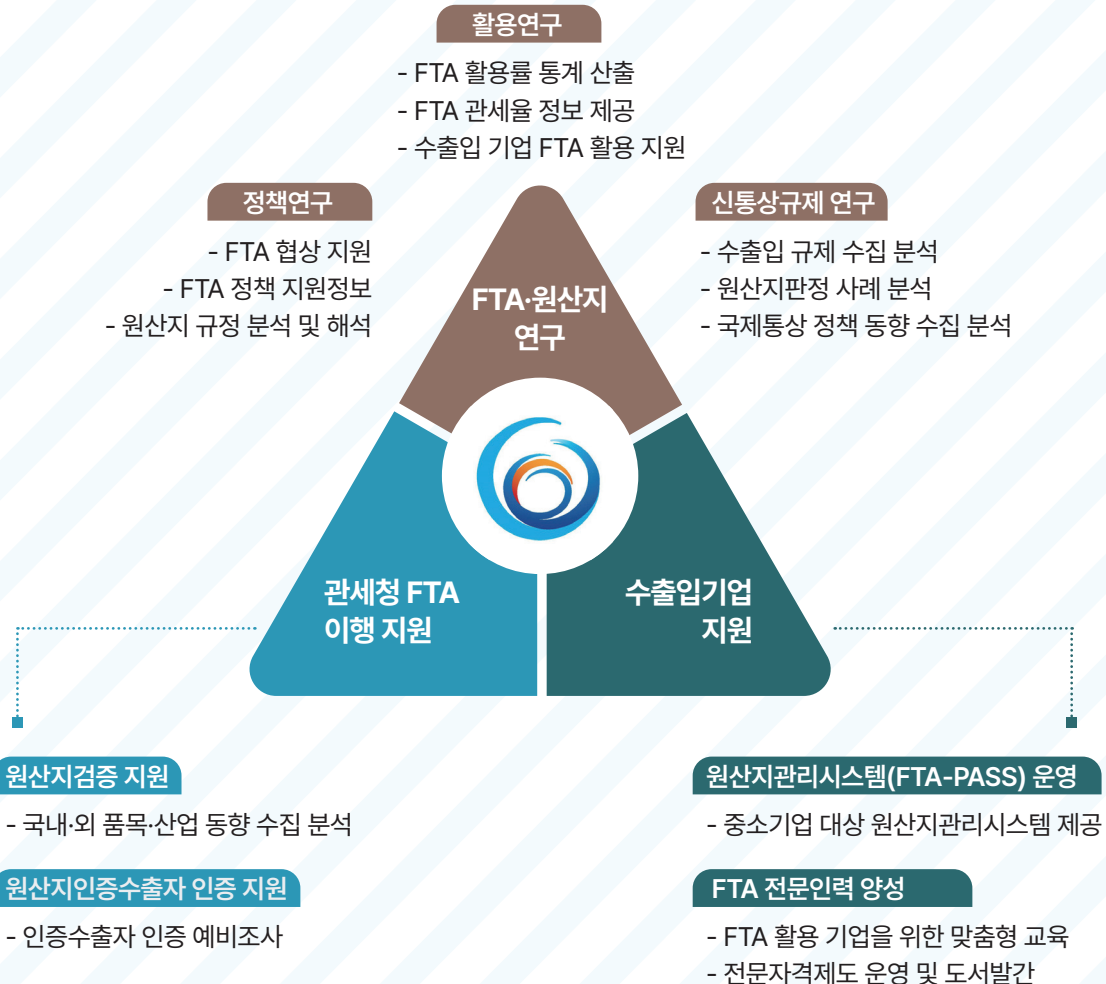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본격적인 Mega-FTA 시대를 맞이하여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국가의 관세행정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FTA BRIEF」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과 원산지 관련 수집 정보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기업들이 FTA 원산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 사업





* 사진 출처 : Freepik

관세청,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하였다.
- ☑ 미국은 2025년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관세부과대상 품목번호(290개)를 발표하였으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여서 국내 수출기업들이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 ☑ 7단위 이하 품목번호의 경우 각국이 달리 운영하고 있어, 동일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 해당 연계표는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목록을 총294개의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우리 수출 제품의 부과 대상* 해당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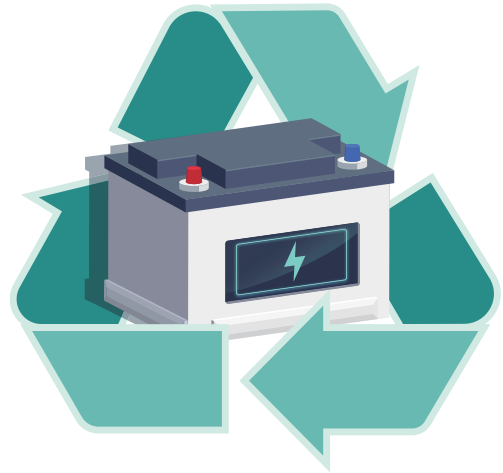
*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철강·알루미늄)의 부과세율은 25%이며, 일부 품목의 경우 함량의 가치에 따라 관세가 결정된다.

※ 해당 자료는 (1) FTA 포털 ▶ 공지사항 또는 (2) 한국원산지정보원 ▶ 발간자료 ▶ 신통상 정보 ▶ 동향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환경제와 FTA 활용

- 사용후 배터리를 중심으로

-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순환경제'에 주목하고 있음
-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 등 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자원순환 제품이 등장함
- 향후 자원순환 제품의 국제 교역 확대가 예상되며, 무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FTA 활용이 요구됨
- 본 고에서는 기존의 선형경제 기반의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점검하고, 순환경제 구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FTA 재정비 필요성을 제시함



[글_오윤진 한국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장]

1. 들어가며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와 EU 그린딜 발표를 계기로, 전 세계는 지속 가능한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자원순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자원 소비가 크고 폐기물 배출이 많은 자동차, 배터리, 철강, 석유화학 산업 등을 중심으로 자원 관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급속히 성장 중인 전기자동차 산업에서는 주요 부품인 배터리의 생산부터 사용 후 처리와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전기자동차 운행 이후 발생하는 '사용후 배터리(used battery)'는 자원순환(Resource Circulation)이 가능한 대표적인 품목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각국은 이를 전략자원으로 간주해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용후 배터리의 적절한 처리와 활용은 탄소 배출 저감은 물론, 희귀 금속 등 주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향후 사용후 배터리를 비롯한 자원순환 제품의 국제 교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해당 제품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원산지 규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원산지 규정은 자원순환 제품의 수출입 시 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순환 경제와 자원순환의 개념 및 관련 국내 정책을 간략히 살펴보고, 사용 후 배터리를 중심으로 FTA 원산지 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순환경제, 자원순환 및 사용후 배터리 정의



'순환경제' 정의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는 제품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의 선형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자원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 체제를 의미한다. 이는 폐기물의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서, 원료부터 설계, 생산, 유통, 소비, 처리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성과 순환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2024)에서 순환경제를
'의도와 설계에 따라 자원을 복원하고 재생하는 산업 체계'로 정의함

‘자원순환’ 정의

자원순환(Resource Circulation)은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사용(Reuse)하거나 재생이용(Recovery)하며, 불가피하게 남은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는 자원의 활용방식에 따라 자원순환을 다음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 [표1] 자원순환(Resource Circulation) 방식

구분	의미
감량화 (Reduction)	제조공정에서 자원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폐기물 배출량을 저감하는 것
재사용 (Reuse)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남은 수명만큼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재제조 (Remanufacturing)	사용 후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조정, 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것
물질 재활용 (Material Recycling)	폐자원(제품·공정스크랩)을 해체, 파분쇄, 선별, 용융 등 물리·화학적 가공을 거쳐 다시 원료화 하는 것
에너지 회수 (Energy Recovery)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 시키는 것

◎ 자료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순환경제정보플랫폼

즉 자원순환은 자원을 일회성 소비로 끝내지 않고, 경제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순환경제 실현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사용후 배터리’ 정의

사용후 배터리라란 전기차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서 탈거되어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를 말한다. 정의와 범위는 관련 정책이나 기술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폐기처리를 전제로 한 폐배터리와 구별되며 재활용·재사용·재제조가 가능한 배터리를 의미한다.

● [표2] 사용후 배터리의 자원순환 방식

구분	의미
물질 재활용 (Material Recycling)	사용 후 배터리를 분해한 뒤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의 유가금속을 추출 및 활용해 배터리 원료로 다시 사용하는 것
재사용 (Reuse)	사용후 배터리를 부품으로 활용해 에너지저장장치(ESS), 비상 전원공급장치(UPS) 등의 제품으로 제조 및 판매하는 것
재제조 (Remanufacturing)	배터리를 분해, 셀 밸런싱, 재조립, 검사 등의 과정에 따라 원래의 성능으로 복원시켜 다시 사용하는 것

◎ 자료 출처 : 2023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

3. 한국의 순환경제 정책 추진 현황



한국은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중 사용후 배터리는 자원순환 실현을 위한 주요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후 배터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순환경제의 법적 정의(2022년)

2022년부터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순환경제를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로 정의하며, 순환 경제 활성화를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명시하고 있다.

[표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4조(순환경제의 활성화)

정부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생태계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친환경 경제 체계(이하 이 조에서 “순환경제”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하락)

산업별 전략 수립 : ‘CE9 프로젝트’ (2023년)

2023년 6월, 정부는 순환경제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자원 순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석유·화학, 철강·비철금속, 배터리, 전자·섬유, 자동차·기계, 시멘트 등 9개 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CE9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별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배터리 산업의 경우,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 기반 조성에 주안을 두고 있다.

법적 기반 마련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2024년)

2024년 1월 시행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순환경제’ 및 ‘순환이용’의 개념을 제도적으로 정의하고, 생산·유통·소비 등 제품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재사용과 에너지 회수 등 다양한 자원순환 방식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표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 (중략)
3.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
 -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 발표 및 법률안 발의(2024년~2025년)

전기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대량 배출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2024년 7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어 2025년 2월에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관련 산업의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체계가 마련되었다.

[표5]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안」 주요 내용

1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사용후 배터리의 시장조성·안전관리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통합법 제정

2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사용후 배터리 시장 및 산업 활성화, 통상규제 대응, 사용후 배터리의 무단 폐기 방지 등을 위해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24~'27)

* 배터리 제조 → 전기차 운행·폐차 → 사용후 배터리 거래·유통
→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전주기 정보 관리 및 공유

3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EU 등 글로벌 통상규제 관련 기업부담 완화, 핵심광물 확보 등을 위해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원료생산, 사용)를 도입·운영('25)

4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되었을 때, 탈거 전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분류('27)

5

사용후 배터리 유통체계 마련

향후 사용후 배터리 시장 활성화, 공정성·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자 등록제 도입, 운송·보관기준 마련 등

한국의 순환경제 정책은 전략 수립, 법제 정비, 산업별 실행 정책의 흐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사용후 배터리는 자원순환 정책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대표 분야로 다양한 정책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4. 사용후 배터리와 FTA 활용



사용 후 배터리의 자원순환

앞서 표2 [사용 후 배터리의 자원순환 방식]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기차나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에서 탈거된 사용후 배터리는 잔존 성능에 따라 재활용, 재사용, 재제조 방식으로 자원순환이 가능하다. 각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림1] 전기 자동차용 EV용 배터리팩의 구성 및 리사이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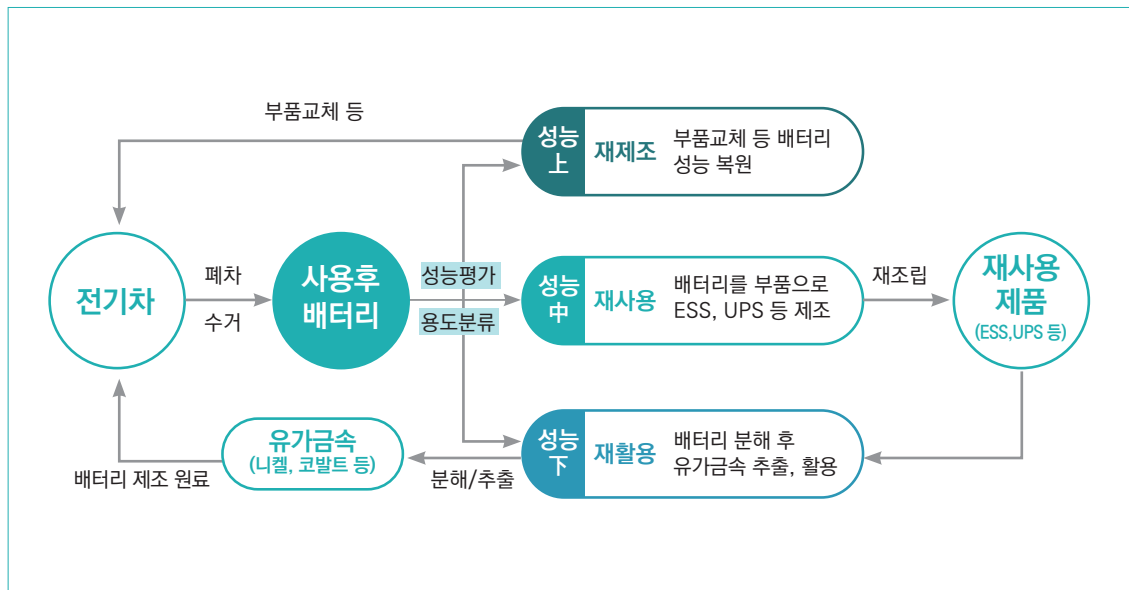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대용량 모듈 적층 배터리팩 개발 보고서(20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이노베이션 자료 인용

먼저, 재활용(Recycling)은 잔존 용량이 60% 미만으로 차량용으로 재사용하기 어려운 배터리에서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핵심 원자재를 분해·추출하여 다시 활용하는 방식이다. 회수된 물질은 새로운 배터리나 전자제품 원료로 재공급된다.

다음으로, 재사용(Reusing)은 잔존 용량이 약 60%~80% 수준일 때 적용되며, 성능이 비교적 우수한 모듈이나 셀을 선별하여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이나 기기 등에 재조립함으로써 부품 수명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재제조(Remufacturing)는 잔존 용량이 약 80% 이상인 배터리에 적용되며, 배터리 내부 핵심 부품을 분해·세척·검사·수리 및 조정 과정을 통해 원래의 성능 수준으로 복원하여 다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 [그림2] 사용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개념도



◎ 자료 출처 : 관계부처 합동(2022.9.5.)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사용후 배터리는 자원순환 방식에 따라 원재료 회수, 원래 용도의 복원, 또는 새로운 용도로의 전환 등 다양한 용도와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제품의 국제 교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확산되고 있는 그린딜 정책에 대비해 자원순환 방식별(재제조·재사용·재활용)로 FTA 특혜관세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과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PSR)을 중심으로, 사용후 배터리의 자원순환 방식별 원산지 규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완전생산기준-중고품 및 폐기물(스크랩)」 FTA 활용

FTA 협정별로 규정 방식과 용어에는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이나 중고품에서 얻어진 부스러기·고물 등은 비원산지 재료의 사용 여부나 최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완전생산품(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전기차에서 탈거된 사용후 배터리는 잔존 수명이나 상태지표(State of Health)에 따라 전기차용으로 재사용되거나, 성능에 따라 다른 용도로 전환될 수 있어 단순한 폐기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중고품·폐기물과 동일한 완전생산기준¹⁾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하에서 주요 FTA 협정문 규정을 중심으로, 재활용·재사용·재제조된 사용후 배터리가 각각 완전생산기준(중고품 및 폐기물)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겠다.

1) 대부분의 협정문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중고품이나 폐기물이 원재료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완전생산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표6] 주요 협정의 완전생산품 기준 - 중고품 및 폐기물

구분	의미
한-칠레· 한-싱가포르 	-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과 부스러기 1)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생산, 또는 2)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수집되고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중고품
한-EFTA 	- 당사국에서 수집된 것으로서 원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거나 복원 또는 수리될 수 없고, 폐품으로만 적합하거나 부품 및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재료 - 당사국에서 수행한 소비나 제조 공정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서 폐품으로만 적합하거나 부품 및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한-ASEAN 	-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저장 또는 수리할 수 없으며 원재료의 부품의 처분이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당한 물품 - 폐기물 및 부스러기로써, 1)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되거나, 2)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의 회수용으로만 적합하여야 한다.
한-인도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를 포함,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복원 또는 수리될 수 없으며 부품 또는 원재료의 처분이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당한 물품
한-EU· 한-튀르키예· 한-영국 	- 당사자 내에서 수집된 것으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또는 폐기물 용도로만 적합한 중고 물품 - 당사자 내에서 수행된 생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한-페루 	-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1) 대한민국 또는 페루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 공정, 또는 2) 대한민국 또는 페루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는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해야 한다.
한-미 	-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1)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이루어진 제조 또는 가공 공정, 또는 2)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 상품은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고상품으로부터 파생되고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재제조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생상품
한-호주 	-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1)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의 생산, 또는 2)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수집되고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중고품 더 이상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상품
한-캐나다 	-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생산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으로부터 회수된 부분품 - 다만, 그 중고품은 그러한 회수용으로만 적합해야하며 이로부터 회수된 부분품은 좋은 성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가공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

구분	의미
한-중국 	당사국에서 이루어진 제조 또는 가공공정으로부터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로써,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하거나 다른 상품의 생산에 원료로서 활용되기 위한 것, 또는 당사국에서 소비되고 수집된 중고품으로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
한-베트남 	-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저장 또는 수리할 수 없으며 그리고 원재료의 부품의 처분이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물품 -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1) 당사국 영역에서의 생산, 또는 2)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한-뉴질랜드 	-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1) 당사국 영역에서의 생산 또는 소비. 다만, 그러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는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또는 2)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더 이상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복구되거나 수리될 수도 없으며, 부분품 또는 원재료의 처리 또는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상품
한-콜롬비아 	-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1)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생산, 또는 2)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는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해야 한다.
한-중미 	-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1)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제조 공정, 또는 2)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는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해야 한다.
RCEP 	- 당사자에서의 생산 또는 소비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다만, 그러한 상품은 처분,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또는 - 당사자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처분,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한-캄보디아 	- 다음의 상품 1) 당사국 영역에서의 생산 또는 소비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다만, 그러한 상품은 처분,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처분,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한-이스라엘 	- 당사국에서 수집된 것으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중고 물품 - 당사국에서 수행된 사용, 소비 또는 제조 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 및 부스러기
한-인도네시아·한-필리핀 	-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저장 또는 수리할 수 없으며 그리고 부품 또는 원재료의 처분이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물품 -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1) 당사국 영역에서의 생산, 또는 2)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사용후 배터리가 **재활용(Recycling)**되는 경우, 대부분의 FTA 협정문에서 완전생산 물품(Wholly Obtained Goods)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협정문은 “더 이상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which can no longer perform their original purpose), 부품 또는 원재료의 처분이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fit only for the disposal or recovery of parts or raw materials, or for recycling purposes)”에 해당하는 물품을 완전생산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후 배터리로부터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의 원료를 추출해 새로운 원재료로 활용하는 경우, 해당 생산품은 투입 원재료의 원산지과 무관하게 완전생산품으로 간주되어 FTA 특혜 적용이 가능하다.

반면, 사용후 배터리가 **재사용(Reusing)** 또는 **재제조(Remanufacturing)**되는 경우에는 본래의 기능과 용도를 유지하므로 완전생산품으로 간주되기 어렵다. 즉, 이러한 제품은 사용후 배터리가 역내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FTA에서 규정하는 완전생산품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일부 FTA에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미 FTA에서는 “재제조 상품(remanned goods)”개념을 명시하고 있으며, 한-캐나다 FTA에서는 “회수된 부분품은 좋은 성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공을 거친 것(therefrom have undergone a process necessary to ensure their good working condition)”이라는 문구를 통해 재제조 목적의 사용후 배터리도 완전생산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요컨대 대부분의 FTA는 “더 이상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품 및 원재료의 회수용”으로서 재활용되는 물품에 한해 완전생산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본래의 목적을 유지한 채 재사용하거나 재제조되는 물품은 그 적용이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 [표7] 사용후 배터리를 사용한 제품의 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

협정문	재활용	재사용	재제조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를 포함,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복원 또는 수리될 수 없으며 부품 또는 원재료의 처분이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당한 물품	O		
-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이루어진 제조 또는 가공 공정, 또는 -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 상품은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고상품으로부터 파생되고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재제조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생상품	O	O	O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FTA 활용

앞서 살펴본 주요 FTA의 중고품 및 폐기물(스크랩)에 대한 완전생산물품 인정 기준에 따르면, 일부 협정(한-미 FTA, 한-캐나다 FTA)을 제외하고는 재사용(Reusing) 또는 재제조(Remufacturing) 목적으로 활용되는 사용후 배터리는 완전생산물품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투입 원재료인 사용후 배터리가 여전히 본래의 기능과 용도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해서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통해 FTA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을 위해서는 먼저 사용후 배터리가 어떤 HS 코드로 분류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표8과 표9에 따르면 자동차 배터리는 HS 제8507.60호에 분류되며, 사용된 폐배터리는 HS 제8549호에 분류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표9의 HS 해설서에서 ‘회수나 재활용’ 목적이 아닌 ‘수리, 정비, 보수, 재사용, 리퍼포싱’을 목적으로 하는 폐배터리는 HS 제8549호에 분류될 수 없다고 해설하고 있는 점이다.

● [표8] 전기차 배터리 HS 분류

HS Code(HSK)				품명
8507				축전지(격리판을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8507	60			리튬이온 축전지
8507	60	20	00	전기차용
8507	60	30	00	에너지 저장장치용(ESS)
8507	60	90	00	기타

● [표9] HS 8549 호해설-전기차 폐배터리(사용후 배터리) HS 분류

구분	내용
HS 8549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호해설	이 호의 목적상 e-웨이스트는 회수(recovery)·재활용(recycling)이나 처분(disposal)에 적당한 물품만을 포함하며, 그들의 원래의 용도나 후속의 용도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 수리(repair)·정비(refurbishment)·보수(renovation)·재사용(reuse)·리퍼포싱(repurposing) 하기에 적당한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순히 중고품이라는 것만으로 e-웨이스트*로 변경되는데 충분하지 않다. * e-웨이스트: 물리적으로 온전하거나(그러나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는) 폐기된 상태(예: 파손·절단이나 그 밖의 형태로 소진되거나 파괴된 것)일 수도 있다.

요약하면 사용후 배터리는 재활용(Recycling)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만 HS 제8549호로 분류되며, 재사용(Reusing) 또는 재제조(Remufacturing) 목적일 경우에는 원제품과 동일한 HS 제8507.60호에 분류된다.

----- ● [표10]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재사용·재제조 제품

구분	투입원재료 HS code	제조	완제품 (HS code)
재활용	HS 8549	⇒	리튬(HS 2825), 코발트(HS 8105), 니켈(HS 7502)
재사용	HS 8507.60	⇒	ESS용 배터리팩(HS 8507.60)
재제조	HS 8507.60	⇒	전기차용 배터리팩(HS 8507.60)

표11의 HS 제8507.60호에 적용되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은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CTS(6단위 세번변경기준)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재제조하여 HS 제8507.60호의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완제품과 투입 원재료 간의 HS 코드(4단위 또는 6단위)가 변경되지 않아 FTA 원산지기준 충족이 어려울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재제조하는 경우, FTA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

----- ● [표11] 주요 협정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 HS 제8507.60호

아시아		유럽		미주	
아세안	CTH or RVC 40%	EFTA	CTH or MC 50%	칠레	CTSH + RVC 45%
중국	CTSH	EU	CTH or MC 45%	페루	CTH or RVC 50%
베트남	CTH or RVC 40%	튀르키예	CTH or MC 45%	미국	CTSH
RCEP	CTH or RVC 40%	영국	CTH or MC 45%	캐나다	CTH or MC 55%
인도네시아	CTH or RVC 40%	이스라엘	CTH or MC 60%	콜롬비아	CTSH or RVC 45%

5. 마무리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자원 효율화를 위한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는 자원순환의 핵심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관련 법령과 정책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 기반을 강화하며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순환 제품이 국제 교역으로 이어지고, 보다 경쟁력 있는 무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요건 충족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사용후 배터리의 자원순환 방식 중 재활용 제품은 대부분의 FTA에서 완전생산물로 인정되어 활용 가능성이 높지만, 재사용 및 재제조 제품은 대부분의 협정에서 적용이 제한적이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선형경제 구조를 기반으로 규정된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후 배터리와 같은 순환경제 제품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에 맞춰 순환경제 제품에 대한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제조 및 재사용 제품에 대한 정의와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들 품목의 FTA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자원순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FTA BRIEF



한국원산지정보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ISSN 3022-7984